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1. 의안번호 : 제2119호

2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3. 제출일자 : 2024년 08월 13일

4. 회부일자 : 2024년 08월 14일

Ⅱ. 제안이유

- '충무로 영상센터'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서울특별시 영상 문화 발전을 목표로 시민들의 영상·전시물 향유를 위한 지원사업, 영상관련 교육 및 장비제공, 미디어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 중으로.
-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영화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전문지식, 인적 · 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,
-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: 충무로 영상센터 운영(시설형)

○ 위 치 : 중구 퇴계로 지하199 충무로역사내 지하1층

ㅇ 규 모

- 시설규모 : 전체면적 371㎡

- 보유장비 : DVD 5.157편, 서적 2.596편, 장비 80종 471개

- 부대시설 : 아카이브실, 전시실, 상영관, 창작지원실 등

나. 위탁기간 : 1년 (2025.1.~2025.12.)

다. 소요예산 : 324백만원('24년 기준)

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마. 위탁사무내용

○ 국내외 다양한 영상·전시물의 소개를 위한 사업

- 영상·시각물의 시민 향유를 위한 영상·서적 아카이브 구축 및 상영관·전시관 지원
- 영화인 및 일반 시민을 위한 영상 관련 교육 및 장비 제공
- 인터넷을 이용한 관련 정보 공유, DB구축, 네트워크 활성화
- 기타 공공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등
- 바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 - 추진 근거
 -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3조 및 제12조
 -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제4조의3, 제6조
 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-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, 영화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정책을 보다 전문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
 - 따라서 민간의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로, 직영으로 운영 시 예산증가, 전문성 부족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민간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원 사업의 효과 제고를 기대 가능

Ⅳ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
 - 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 제3조, 제12조
 - 제3조(영상진흥시책의 수립)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진흥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
 - 2.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
 - 3.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
 - 4.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
 - 5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 개최 국내·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
 - 6.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
 - 7.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
 - 8.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제12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, 제4조의3, 제6조
 -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-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 - 제4조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3. 문화·체육·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나. 예산조치 : 2025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Ⅴ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1. 동의안의 개요

 동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(2024.12.31.) 예정인 '서울특별시 충무로 영상센터'의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의31)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.

2. 충무로 영상센터의 운영 현황

- 서울시는 시민의 영상문화 향유와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영상 산업의 저변을 확대·육성하고자 '한국독립영화협회'와 업무협약을 체결(2001.6.)하고 지하철 충무로 역사 내에 '충무로 영상센터 활력 연구소'를 개관함(2002.11.).
- 이후 서울시와 한국독립영화협회 간에 운영비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'충무로 영상센터 활력연구소'가 일시 폐관(2003.12.)되었으나, '충무로 영상센터 오! 재미동'(이하 "충무로센터")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'(사) 서울영상위원회'²⁾가 수탁받아(2004.2.17.재개관) 지난 20년간 운영해 오고 있음.

②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¹⁾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
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재계약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²⁾ 서울에서의 영상물 제작을 위한 합리적 환경 개선 및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영상물 촬영 상의 편의를 제공하고, 서울의 영상산업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아 설립·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, 당초 법률이나 조례 상의 근거 없이 운영되다가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15.5.18.)으로 인해 지원 근거가 마련됨.

 현재 충무로 역사 내 지하 1층에 위치한 충무로센터는 아카이브, 상영관, 전시실, 커뮤니티룸, 창작지원실, 장비실, 교육실로 조성 되어 있으며, DVD 및 도서 열람, 영화 관련 교육, 영화 장비 대여 및 제작지원, 소극장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음.

< 충무로 영상센터 시설 현황 >

∘ 위 치 : 중구 퇴계로 지하 214 충무로역사 내 지하 1층

◦ 규 모:약 371㎡

• 주요시설: 아카이브, 오픈라운지, 장비보관실, 극장, 커뮤니티룸, 사무실 등

◦ 운영시간 : 월~토, 11:00~20:00(일요일 포함 공휴일 휴관)

• 주요기능 : 아카이브 및 열람, 교육, 장비·제작지원, 소극장, 오픈라운지 운영 등

∘ 장비 및 물품 : DVD(5,157편), 도서자료(2,596권), 물품(총 80종 471개)

∘ 공간현황

구 분 규모		운 영 내 역		
아 카 이 브	141 m²	DVD 및 영상자료 관람, 서적 열람, 센터안내 등		
상 영 관	74 m²	영상자료 관람		
전 시 실	46 m²	프로, 아마추어 작가 작품 소개 및 전시		
커 뮤 니 티 룸	37 m²	유료대관 및 공간지원		
창작지원실, 장비실, 교육실	73 m²	회의(세미나), 장비보관, 사무공간 등		

- 한편 충무로센터는 종전의 위탁기간(2020.1.1.~2022.12.31.)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웠으나 민간위탁 재계약(2023.1.1.~2024.12.31.) 이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이 본격화되면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.
-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및 OTT 이용의 증가로 인한 서적·DVD 및 상영시설 이용의 감소, 대여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이전 시기의 이용 실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< 코로나19 팬데믹 전·후 충무로 영상센터 이용 실적 >

(단위:명)

구	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TI 큰 여러시	서적	22,106	23,541	4,382	8,123	12,414	15,215
자료열람실	DVD	4,679	4,640	833	1,200	1,382	1,740
교 육		509	339	405	526	441	534
		(76회)	(39회)	(52회)	(52회)	(60회)	(67회)
영화 성	상영	913 (63회, 99편)	1,008 (68회, 118편)	1,406 (극장 11회· 18편·157명/ 온라인 1회· 12편·1,249명)	1,322 (극장 11회· 30편·127명/ 온라인·1회· 12편·1,195명)	826 (52회·76편)	1,008 (52회·82편)
극장 대관	및 활용	1,699 (82호l)	1,802 (82호l)	559 (30호l)	279 (47회)	1,095 (72회)	1,895 (106건)
장비 원 (유료대여/촬영 할인지	명장비70%	1,695 (117건, 295일)	1,079 (99건, 22일)	790 (69건, 58일)	815 (70건, 163일)	1,885 (128건, 377일)	1,720 (132건, 344일)
영상편집설	실 운영	848	542	520	492	 344 (커뮤LIEI居	559
창작지원설	실 운영	115(35회)	229(24회)	149(13호1)	40(22회)	으로 1113	333
전시실 운영		37,589	31,011	7,787	22,721	27,703	33,372
선시된 표정	正 6	(10회)	(11회)	(6호)	(10회)	(10회)	(10회)
미디어 네트워크		124	280	142	40	69	3,358
- 비디어 네 <u>-</u>	_71	(2단체)	(4단체)	(5단체)	(2단체)	(8단체)	(10단체)
합	계	70,277	64,471	16,973	35,558	46,159	59,401

3. 민간위탁 재위탁의 타당성 검토

 충무로센터는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, 「영상진흥기본법」,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, 「서울특별시 영상 진흥 조례」를 근거로 설치・운영되고 있으며³)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는 지역산업의 육성・지원과 지방문화・예술의 진흥을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음.

³⁾ 센터 설치 당시에는 「문화영상진흥기본법」(1995년 제정)과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(1999년 제정)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며, 이후 「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(2006년)과 및 「서울특별시 영상진흥 조례」의 제정(2009.9.29.)으로 사업근거가 확립되었음.

-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충무로센터는 민간위탁의 대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리고 동 동의안은 올해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충무로 센터의 운영기간을 1년간(2025.1.1.~2025.12.31.) 연장하고 새로운 수탁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한 동의안 제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.
- 다만 당초 서울시는 충무로센터를 2024년까지만 운영하고 2025년에 개관 예정인 '서울영화센터'로 이관할 것을 전제로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을 2년(2022.1.1.~2024.12.31.)으로 정하였으나, 서울영화센터의 충별 공간용도가 변경되면서⁴〉충무로센터의 이관이 사실상 무산되고 2026년부터는 충무로센터가 수행하던 기능 중 일부만 '영상산업지원사업'5)과 통합될 예정임.
- 따라서 충무로센터의 폐지가 확실시된 현 상황에서 1년 간의 기능 유지를 위해 장기・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제도인 민간위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.

입법조사관	연락처		
최범준	02-2180-8056		

^{4) 2023.8.23.} 서울영화센터 건립사업 2차 변경계획(층별 공간용도 재구성)

⁵⁾ 영상산업지원사업은 종전에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'영화창작공간 운영'과 '독립영화 활성화'을 통합하여 2023년에 신설된 민간위탁 사업임.